해양수산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3. 23.(목) 조간 2023. 3. 22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3. 3. 22.(수) 06:00
담당 부서	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 황준성 (044-200-5420)
		담당자	사무관 김선하 (044-200-5431)

올해부터 청각(해조류)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할 수 있다!

- 연간 총 13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수혜 예상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(“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”)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20일(월)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.

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,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. 이번 「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」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, 다시마,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되었다.

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, ’21년 생산량은 11,363톤*이다.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자료 :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

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관련 통계 및 사진

□ 생산현황

(단위 : 톤, 백만원)

구분	2019년		2020년		2021년	
	생산량	생산금액	생산량	생산금액	생산량	생산금액
해조류	**1,851,224**	**891,022**	**1,769,202**	**773,636**	**1,858,165**	**744,385**
연근해어업	8,523	16,923	7,565	16,197	8,780	16,764
해면양식업	1,842,701	874,099	1,761,637	757,439	1,849,385	727,621
청각	**3,507**	**2,513**	**7,202**	**4,119**	**11,363**	**3,883**
연근해어업	249	712	94	115	46	53
해면양식업	3,258	1,801	7,108	4,004	11,317	3,830

* 자료 :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

□ 청각 건조시설

< 청각 >

< 청각 건조시설 (채반식) >